2025년 중예산 한국영화 제작지원 사업요강

1. 사업 목적

1. 영화시장 침체 장기화와 흥행 양극화로 위축된 영화 투자 및 제작 환경 개선 도모

2. 한국영화 산업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중예산 규모 영화의 신작 제작을 촉진하여 민간 투자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영화산업 선순환 구조의 복원과 영화 수익성 개선 도모

3. 한국영화의 새로운 도약을 견인할 수 있는 참신하고 차별화된 기획과 스토리를 바탕으로 예술성과 상업성을 겸비한 중예산 영화의 제작 활성화 도모

2. 지원 내용

1. 지원규모 및 신청자격

구분	내용	
지원대상	■순제작비 20억 원 이상 80억 원 미만의 장편 실사 극영화(60분 이상)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제작 착수(본 촬영 진행)된 작품은 신청 불가.**	
지원총액	■99억 3천만 원	
신청 자격	신청 구분	자격내용
	제작사 신청기준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한 영화제작업자**.(개인신청 불가)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투자배급사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와의 공동제작* 및 국제공동제작**은 가능하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그 자회사인 영화제작업자의 경우 동 사업 (단독) 신청주체에서는 제외함. ☞ 단, 신청인인 제작사 대표(영화제작업자)의 장편 실사 극영화 제작 경력 1편 이상 또는 프로듀서 참여 경력 2편 이상 경력을 보유해야 함.

공동제작 영화 신청기준	* 공동제작 영화로 신청 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투자배급사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와 공동제작 하는 경우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유관회사의 공동제작 지분율 범위(30% 미만) 내에서 허용(「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항)하되, 아래 신청자격 적용례를 참고하여, 신청인인 일반 영화제작업자 명의로 단독 신청 * 공동제작 영화로 신청 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투자배급사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가 아닌 일반 제작사와 공동제작 하는 경우 공동제작사의 지분율 범위는 50% 미만 내에서 허용하되, 아래 신청자격 적용례를 참고하여, 신청인인 일반 영화제작업자 명의로 단독 신청 * 단, 메인투자배급사와의 메인투자배급계약을 하는 작품이 아닌, 창업투자회사와의 메인투자계약 또는 제작사가 메인투자사 역할을 하는 영화의 경우, 지원약정 체결 후 3개월 이내 메인투자(배급)계약 체결 단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한 영화배급업자인 메인투자배급사와의 P&A 투자계약을 별도로 체결할 경우, 해당 메인투자배급사의 P&A 비용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상기 공동제작지분에 합산하여 산정하지 아니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지단에 속하는 투자배급사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와 공동제작 할 경우 해당 영화의 지식재산권(IP) 활용 권한은 우선적으로 제작사가 보유하도록 해야 하나, 신청인인 영화제작업자와 IP 활용 권한 공동 소유는 허용함. 다만, 신청인인 영화제작업자를 배제하고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투자배급사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가 단독으로 지식재산권(IP) 활용 권한을 소유하는 것은 불허함. ☞ (권장사항) 투자(배급)사가 신청인인 영화제작업자와 메인투자(배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영화 개봉 후 5년 도과 후 해당 영화의 저작권을 영화제작업자에 귀속시키는 조항 삽입을 권장함. ☞ (유의사항) 신청인인 영화제작업자와 공동제작 하는 공동제작사의 경우 신청인 외 타 프로젝트에 동시 참여는 불허함
국제공동 제작영화 신청기준	** 국제공동제작 영화의 경우,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기준'에 의한 한국영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한 국내 영화제작업자 명의로 단독 신청 ☞ (참고사항) 국제공동제작영화의 공동제작사 기준 : 해당 공동제작국가에서 제작·개봉한 장편 실사 극영화 1편 이상을 보유한 당해 국가의 법률에 의한 영화제작업자 ☞ (유의사항) 지원작으로 최종 선정된 국제공동제작 영화의 경우 약정체결 전까지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인정' 기준에 의거한 한국영화 인정을 득해야 함
신청자격 적용례	**※ 신청자격 적용례** ① 일반 영화제작업자 단독 제작 영화의 경우 : 일반 영화제작업자 단독으로 신청 ② 일반 영화제작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메인 투자배급사가 공동제작하는 영화의 경우 : 일반 영화제작업자 단독으로 신청 ③ 일반 영화제작업자(A)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메인 투자배급사 또는 다른 일반 영화제작업자(B)와 공동제작하는 영화의 경우 : 2개 영화제작업자 중 **공동제작지분율 50% 이상인** 1개 회사 명의로 신청 ④ 일반 영화제작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가 공동제작하는 영화의 경우 : 일반 영화제작업자 단독으로 신청

<공통사항>

■ 영화제작업자(제작사 및 공동제작사) 기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영화제작업자로, 사업자등록증과 영화제작업 신고증을 발급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한함

☞ (유의사항) 동 사업 최종 지원작으로 선정된 영화제작업자 중 **개인사업자의 경우**, **약정체결 전까지 법인사업자 신고를 필해야 함**

총제작비 조달책임 구분에 따른 기준	**■메인투자(배급)사를 통한 총제작비 총액을 조달(메인투자배급계약)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 지원 신청사가 지원작 선정 및 약정체결 후 3개월 내에 P&A 비용을 포함한 총제작비 조달 및 제작비의 집행, 제작의 완성, 개봉, 정산 등 '제공사'의 역할 일체를 수행하는 메인투자(배급)사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원회 지원금을 포함한 총제작비 전체를 조달하는 경우를 의미 **■메인투자사를 통한 순제작비 총액만 조달(메인투자계약)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 지원 신청사가 지원작 선정 및 약정체결 후 3개월 내에 P&A 비용을 제외한 순제작비 조달 및 제작비의 집행, 제작의 완성, 개봉, 정산 등 '제공사'의 역할 일체를 수행하는 메인투자사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원회 지원금을 포함한 순제작비만을 조달하는 경우를 의미

		☞ (유의사항) 메인투자사와 순제작비에 한한 메인투자계약만 체결하는 경우 지원 신청사는 P&A 비용 조달(투자)에 대한 별도의 계약 및 완성작의 배급을 담당할 배급(대행)회사와 배급(대행)계약을 각각 체결해야 함 **▪신청사(제작사)가 메인투자사로서 총제작비 총액을 조달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 지원 신청사가 지원작 선정 및 약정체결 후 3개월 내에 P&A 비용을 포함한 총제작비 조달 및 제작비의 집행, 제작의 완성, 개봉, 정산 등 '제공사'의 역할 일체를 수행하는 메인투자사로서 위원회 지원금을 포함한 총제작비 전체를 부분투자계약, 제작사 자체 지분투자, 금융권 융자 등을 통해 책임지고 조달하고자 하는 경우를 의미 ☞ (유의사항) 이 경우 지원 신청사는 순제작비 조달에 관한 개별 조달(투자) 계약 외에 P&A 비용 조달(투자)에 대한 별도 계약 및 완성작의 배급을 담당할 배급(대행)회사와 배급(대행)계약을 각각 체결해야 함 ※ 참고사항 : 메인투자배급의 정의는 '3.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 필수 지원조건 – 메인투자배급의 정의' 참고
	참여 연출자 기준	▪단편영화 연출 경력이 있거나 장편 실사 극영화 1편 이상 연출 경력이 있는 연출자

신청 분야 및 선정 편수	㉮군: **순제작비 20억 원 에서 30억 원 미만 작품**	㉯군: **순제작비 30억 원 에서 60억 원 미만 작품**	㉰군: **순제작비 60억 원 에서 80억 원 미만 작품**	**제작완료 및 극장개봉 기한**
	2편 이내	6편 내외	2편 이내	(제작완료) 약정일 ~ 15개월
				(극장개봉) 약정일 ~ 2년
	▪ 신청 분야는 영화 순제작비 규모로 나뉘며 <㉮군> 20억 원 이상 30억원 미만, <㉯군> 3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군> 60억원 이상 ~ 80억원 미만 중 1택하여 신청 ▪ 선정 편수 및 금액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편당 지원금액	▪편당 지원금액은 순제작비의 30% 혹은 15억 원 중 더 낮은 금액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차등지급)

2. 지원금 성격 및 지원금(보조금) 사용 용도 등

구분	내용	
지원금 성격	▪후순위 원금 회수 방식의 보조금 직접 지원	
	후순위 원금 회수의 정의	- 최초 극장 개봉 이후 2년 동안 극장 개봉 및 국내외 부가시장 매출에 의해 발생한 수익금 중 위원회의 지원금(보조금)을 제외한 총제작비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위원회의 지원금을 포함한 총제작비 까지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위원회 지원금(보조금) 한도 내에서 회수하는 것을 의미 ☞ 위원회의 지원금(보조금)을 제외한 총제작비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지원금(보조금)을 회수하지 않으며, 위원회 지원금(보조금)을 포함한 총제작비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위원회는 총제작비에서 차지하는 위원회의 수익지분율에 따른 수익을 별도로 회수하지 아니함.
	후순위 원금 회수의 예외 적용	- 제작완료(약정체결일로부터 15개월 내) 후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시, 지원약정서상 기재된 지원작품의 순제작비에서 5% 이상을 초과 집행한 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다만, 지원 신청사가 지원약정서상 기재된 지원작품의 순제작비에서 5% 이상을 초과한 집행금액에 대해 인정을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는 지원금(보조금) 반환 기준에 따른 후순위 원금 회수 원칙을 적용치 아니하고, 위원회 지원금(보조금) 또한 다른 투자지분을 보유한 투자자와 동등하게 극장 개봉 후 매 정산시기 마다 1/n 방식으로 원금 회수
	위원회 지원금 (보조금) 반환 기준	☞ 붙임 1 자료 참고
지원금(보조금) 사용 용도	▪선정된 영화 순제작비 용도만으로 집행	

사전제작 (Pre-production)	테스트 촬영 재료비, 장비 대여비 등 사전제작비, 프리 프로덕션 진행비
제작 (Production)	스태프 및 배우 인건비, 미술/소품/의상/분장/스틸/로케이션 촬영관련 비용, 각종 기자재 임차료 등 프로덕션 관련 비용 일체
후반제작 (Post-production)	편집, 음악, 음향, DI, DCP, 자막 등 포스트 프로덕션 관련 비용 일체

▪ 영화제작업자(제작사 대표 또는 공동제작사 대표)의 인건비는 위원회 보조금으로 집행 불가
▪ 위원회 지원사업 사업기간 내 발생된 비용만 인정(약정체결 전 집행금액은 소급적용 불가)
▪ 세금계산서/카드 집행 중 발생되는 부가가치세와 4대 보험 및 원천징수액의 사업자 부담액은 보조금에서 집행 불가

인건비성 집행	- 보조금의 20% ~ 80% 이하 범위에서 집행 - 스태프 인건비 우선 집행 및 2025년 최저임금 준수 의무 * 시급(1시간 기준): 2025년 10,030원 / 월급(209시간 기준) : 2,096,270원 ※ 지원사업 참여 주요인력(연출, 프로듀서 등)에 대한 참여율 기재는 필수 * 동일 기간 내 참여율 100% 초과 불가 * 중복 참여 100% 초과 확인 시 집행 불인정 - 원천징수세액 및 4대 보험료, 예술인 고용보험료 집행 가능(단, 고용주 부담금 제외) - 인건비성 집행: 정규직, 일용직, 프리랜서 인적용역에 해당되며, 자세한 내용은 (양식) 세부집행내역서 참조
식대 및 부식비	- 보조금의 20% 이하 범위에서 집행
기타	- 기자재(카메라 등) 구입, 경상비(통신비, 임대료 등 사무실 운영비), 수리 및 수수료 비용 등 집행 불가

지원금 교부대상 및 정산책임

▪ (지원금 교부대상) 지원금은 신청인인 영화제작업자에 교부를 원칙으로 함
▪ (지원금 사용내역 정산책임) 위원회에서 지원한 보조금 사용 내역에 대한 정산책임은 지원금 교부대상인 영화제작업자에게 있음
▪ (수익금 정산책임) 영화 제작완성 및 개봉 후 실질 손익분기점 달성 시까지 위원회 보조금 범위 내에서 보조금 원금을 회수하는 조건인 바, 정산 기한(최초 극장개봉 후 2년 이내) 내 위원회 보조금 원금에 대한 정산(반환) 책임은 신청인인 영화제작업자와 영화 총제작비 및 수익금의 집행·정산을 총괄하는 메인투자(배급)사가 공동으로 부담함. 별도 메인투자(배급)사가 없을 경우 영화 상영수익 및 부가시장 매출에 대한 정산을 대행하는 배급(대행) 회사와 공동으로 부담함.
☞ (유의사항) 보조금 원금에 대한 정산책임을 제작사와 메인투자(배급)사가 공동으로 부담토록 하는 규정에 따라, 지원 약정체결 후 메인투자(배급)사 내지 배급(대행)사가 정해지는 경우 위원회는 제작사 및 메인투자(배급)사 내지 배급(대행)사와 지원약정서 부속합의계약(보조금 원금에 대한 정산 및 원금 상환에 대한 책임을 명문화)를 체결할 수 있음.

지원금 지급시기 및 방법

▪ **총 2단계로 나누어 지급**
- 1차 : 약정체결 및 메인투자계약 체결 후 영화 크랭크인 시(착수계 제출) 전체 지원금액의 90% 범위 내에서 1차 지원금 지급
- 2차 : 영화 크랭크업 후 후반작업 진행시(착수계 제출) 1차 지급액의 잔여금액(지원금액의 10%) 지급

보조금 정산 시기, 내용, 절차 등

※ 보조금 정산 시기, 내용, 절차 등 세부사항은 지원약정체결 및 지원약정 부속합의 체결시 합의에 의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제작완료 시**
▪ **지원금(보조금) 정산(제작비 정산)**
- 정산범위: 위원회 지원금
- 정산기한: 지원약정 체결일로부터 15개월 이내 제작완료일 기준 1개월 이내
- 정산내용: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예산집행내역서 및 증빙자료, 지원금(보조금) 대상 회계검증/감사보고서 제출 등

□ **극장 개봉 시**
▪ **(1**차 정산) 수익금 정산(극장 상영, 국내외 부가시장 매출 등에 대한 위원회 지원금(보조금) 원금 정산 및 배분)
- 정산범위: 극장 상영 및 부가시장(국내 및 해외) 매출에 따른 수입
- 반환대상: 극장 상영 수입금 및 국내외 부가시장 매출수익이 영화의 총제작비에서 위원회 지원금액(보조금)을 제외한 총제작비 기준 손익분기점을 상회할 경우 위원회 보조금을 포함한 총제작비 기준 손익분기점까지 위원회 보조금 원금 한도 내에서 발생한 수익금

- 정산기한: 상영계약서 상 1차 정산일로부터 45일 이내
- 정산내용: 수익금 정산서 제출, 수입/지출 검증을 필한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총제작비 대상 회계검증/감사 보고서 제출 등
- 수익금 반환기한 : 위 정산기한(1차 정산일로부터 45일 이내)으로부터 1개월 이내

■ **(2~N차 정산)** 수익금 정산(장 상영, 국내외 부가시장 매출 등에 대한 위원회 지원금(보조금) 원금 정산 및 배분)

- 정산범위: 극장 상영 및 부가시장(국내 및 해외) 매출에 따른 수입
- 반환대상: 극장 상영 수입금 및 국내외 부가시장 매출수익이 영화의 총제작비에서 위원회 지원금액(보조금)을 제외한 총제작비 기준 손익분기점을 상회할 경우 위원회 보조금을 포함한 총제작비 기준 손익분기점까지 위원회 보조금 원금 한도 내에서 발생한 수익금
- 정산기한: 상영계약서, 부가판권 계약서상 N차 정산기일(월별 정산 기준)로부터 매 45일 이내에 정산하되
- 정산종료 : 최초 상영관 상영 종료일로부터 2년 후
- 정산내용: 수익금 정산서 제출, 수입/지출 검증을 필한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등
- 수익금 반환기한 : 위 정산기한(1차 정산일로부터 45일 이내)으로부터 매 1개월 이내

3.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필수 지원조건	■지원 약정체결 **후 3개월 이내 메인 투자배급계약*** 체결(메인투자배급계약서 사본 제출) 내지 **총제작비에 대한 개별 조달(투자 및 배급)계약 체결**(위원회 지원금(보조금)을 제외한 공동메인투자계약서, 부분투자계약서, **P&A 비용 투자계약서** 등 총제작비 전체 조달을 증명하는 계약서 전체 사본 및 배급(대행) 계약서 사본 제출) 및 약정체결 후 **최대 6개월 이내 크랭크인(본촬영) 조건** ☞ (유의사항) 위 조건 미충족시 지원결정 취소(**취소될 경우 후순위 지원후보작에 대하여 지원자격 부여**) ☞ (유의사항) 위 조건 미충족에 따른 지원결정 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 후순위 지원예비 후보작(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 시 지원 결정작 및 지원예비후보작(1순위에서 N순위까지)에 대한 심사결과 확정 및 공표) 중 동일 순제작비 구간(1. 지원규모 및 신청자격 - 신청분야 및 선정편수 ㉮군~㉱군) 영화 중 차순위 득점자가 자동 지원 자격 획득 ☞ (유의사항) 지원 약정체결 후 메인투자배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지원신청서 및 지원약정서상 순제작비와 메인투자배급계약서상 순제작비는 동일해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순제작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순제작비의 최대 5%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선순위 지원작의 지원결정 취소로 추가 지원자격을 획득한 후순위 지원예비 후보작의 경우 지원사업 연내 추진일정을 감안하여 **약정체결 후 3개월 이내 메인 투자배급계약 체결 및 크랭크인(본촬영) 조건** ■**약정체결일로부터 15개월 이내 제작완성** ■**약정기한(약정체결 후 2년) 내 극장개봉**** 의무

메인투자배급의 정의	- 메인투자배급이란 투자한 영화의 **총제작비 조달** 및 제작비의 집행, 제작의 완성, 개봉, 정산 등 '제공사'의 역할 일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 * 메인투자사(배급)사는 위 역할을 수행하는 회사로서, 투자·배급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메인투자배급사와 배급업을 겸하지 않고 투자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창업투자회사 등의 메인투자사를 지칭함 * 신청인인 제작사가 메인투자사 역할을 하는 경우 또한 상기 메인투자배급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유의사항) 배급업을 겸하지 않는 창업투자회사 등과의 메인투자계약 체결 또는 신청인인 제작사가 메인투자사 역할을 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지원 신청당시 영화의 P&A 비용 조달계획 및 구체적인 배급계획 등 제출 필수
극장개봉 기준	- 인구 200만명 이상 특별시·광역시에서 각각 '실질개봉'(개봉기간 중 40회차 이상 상영)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하는 2025년 실질개봉 기준에 의거 일부 내용 조정될 수 있음
P&A 비용 별도 조달의 경우	- 메인투자배급사와의 메인투자계약을 하는 작품이 아닌, 창업투자회사와의 메인투자계약 또는 제작사가 메인투자사 역할을 하는 영화의 경우, 메인투자계약 내지 부분투자계약 체결 및 배급(대행)사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한 영화배급업자인 메인투자배급사와의 P&A 투자계약을 별도로 진행할 경우, 해당 메인투자배급사의 P&A 비용에 대해서는 '1.지원규모 및 신청자격 – 신청자격 – 공동제작영화 신청기준'상의 공동제작사 지분율 범위 제한을 적용치 아니함

※ 유의사항

1. 동 사업 신청인인 영화제작업자가 메인투자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한 영화배급업자가 아닌 투자전문회사(창투사 포함)나 해외투자사일 경우 또는 신청인이 총제작비 전체를 조달하는 메인투자사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P&A 완성작의 배급을 담당할 배급(대행)회사와 배급(대행)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함
   * 신청인이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한 영화배급업자가 아닌 투자전문회사와 체결한 메인투자계약 내용이 P&A 비용을 제외한 순제작비 투자에 해당할 경우 별도의 P&A 조달(투자)계약서 제출 필수
   * 신청인이 총제작비를 조달하는 메인투자사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P&A 조달(투자)계약서 제출 필수
2. 동 사업 신청인인 영화제작업자가 자체 메인투자사로서 순제작비 전체를 조달하는 책임을 지는 경우, 약정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총제작비 예산 전체 조달을 증명하는 외부 투자계약서 사본 전체 제출 필수(신청사가 자체 지분 투자하는 금액이 존재할 경우 자체 자금 확보내역(자체 확보자금과 관련하여, 동 지원작품 제작을 위해 은행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한 자체예금 보유 내역서 등 제출 필요) 증빙 필요)
3. 약정체결 후 작품 크랭크인 시기는 최대 6개월 이내로 하되, 메인투자(배급)계약 체결이 3개월 이전에 이뤄질 경우 크랭크인 시기는 조정 가능(예컨대 약정체결 후 1개월 후 메인투자(배급)계약 체결시 크랭크인 시기는 메인투자(배급)계약 체결일 이후 5개월 이내로 조정). 다만, 약정기한 내 메인투자(배급)계약은 체결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크랭크인 시기를 조정해야 할 경우 위원회의 사전 승인(별도 연장 적부 심사 등)을 득해야 함.
4. 약정기한 내 작품 제작완성은 됐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극장개봉 시기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사전 승인(별도 연장 적부 심사 등)을 득해야 함.
5. 지원작 결정 후 메인투자 유치 단계에서 지원신청 당시 제출한 순제작비 규모(순제작비의 5% 범위 내)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또한 위원회의 사전 승인(별도 연장 적부 심사 등)을 득해야 함.

필수 확인사항

■ 영화제작업자(신청인) 및 연출자 경력 증빙에 관한 확인사항
- **[영화제작 및 연출경력이 있는 경우]** 영화제작자 및 연출자 경력 확인은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www.kobis.or.kr)'에 승인된 '영화표준식별코드(FIMS)'를 신청서(양식)에 기재하여 증빙(FIMS확인방법 참고)

■ 지원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제작 착수(본촬영)되지 않은 작품이어야 하며, 신청접수 마감일 이전에 **이미 제작 착수(본촬영)된 영화는 신청 불가.**

■ 위원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작품의 추가 제작비 지원/투자 관련 사항
- 가능: 지자체 지원금, 최근 10년 매출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투자배급사, 창투사, 은행, 해외자본(투자사, 제작사, 금융기관 여부 불문) 등을 통한 메인투자, 부분투자 모두 허용
- 불가능: 타 국고사업 지원금

	■ 원작이 있는 경우 신청 시 원작사용에 대한 사용계약서(사용동의서) 제출 ■ 재외동포도 신청이 가능하나 반드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신청편수는 영화제작업자(제작사) 및 연출자(감독) 당 1편의 작품에 한함. 신청 제작사가 다를 경우라도, 제작사 대표가 동일인인 경우 중복신청 불가. **예 시** - 동일인인 A제작사 대표 명의로 1개 작품, B제작사 대표 명의로 또 다른 1개 작품 등 복수의 작품 신청불가 - 동일인인 A감독이 연출하는 작품을 A제작사 명의로 1개 작품, B제작사 명의로 또 다른 1개 작품 등 복수의 작품 신청 불가
신청 및 심사 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www.kofic.or.kr)로 접수되지 않을 경우(우편, 택배, 방문, 퀵서비스 신청 불가) ■ 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출 서류가 미비한 상태로 신청한 경우 ■ 아래 해당하는 작품은 신청이 불가함 - 신청일 현재 기준, 과거 위원회에서 시행한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작품 - 위원회 기획개발지원 및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사업실적보고 및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작품을 지원받은 영화제작업자 및 해당 작품 연출자 ■ 아래 해당하는 신청인 및 연출자는 신청이 불가함 - 신청일 현재 위원회 제작지원 사업 선정되어 제작지원 사업을 수행 중인 제작사(대표자) 및 연출자 **예 시** - 영화제작업자 A가 위원회 선정작 <가>의 영화제작업자 또는 연출자로 참여 중이고, 아직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연출자 B가 영화제작업자 C의 선정작 <나>의 연출자로 참여 중이고, 아직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연출자 B와 영화제작업자 C는 다른 작품으로 사업 신청을 할 수 없음 - 연출자 D가 선정작 <다>의 연출자로 참여 중이고, 아직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다른 작품으로 참여할 수 없음 - 연출자이자 영화제작업자인 E가 선정작 <라>를 제작중이고, 아직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다른 작품으로 사업 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청마감일 기준 위원회의 관련규정 또는 각종 약정 및 계약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있는 제작사(대표자), 연출자 - 신청마감일 기준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제작사(대표자), 연출자 인 경우 - 신청사가 보조사업 지원신청 시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의4에 따른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위반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기타 심사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부적격하다고 판단, 의결한 작품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의 10조(보조금 교부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사업수행 조건	■ 선정작은 근로표준계약서, 시나리오표준계약서, 상영표준계약서 등 영화산업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함 ■ 보조사업자는 영화제작 완료(약정체결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따른 지원금 정산(사업결과보고서 및 예산집행내역서 등 제출) 시 지원 대상 영화의 A 프린트를 제출해야 하며, 극장개봉 기한 마감(약정체결일로부터 24개월 이내) 한 달 전까지 극장 개봉용 최종 완성본을 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함 ■ 지원약정 체결 3개월 내 메인투자(배급)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본 촬영을 개시하지 않은 작품은 원칙적으로 기간 연장이 불가하나,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할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15일 이내에서 연장 허용. ■ 신청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장 3개월 이내에서 약정 사업기간 연장이 가능함. 단, 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유별로 연장기간은 상이할 수 있음. ■ 제출된 사업 결과물은 위원회가 사업 수행 결과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 결과는 차기 위원회 사업 참여 시 반영될 수 있음 ■ 보조사업자는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시 **지원금(보조금) 대상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함. ■ 작품완성 및 극장 개봉 이후 2년 동안 위원회 지원금(보조금)을 제외한 총제작비 기준 손익분기점을 상회하는 수익이 발생할 경우 위원회 지원금(보조금)을 포함한 총제작비 기준 손익분기점 도달 시까지 위원회 지원금 범위 내에서 지원금(보조금) 원금 상환 의무가 있음(수익금 발생시 위원회

보조금에 대한 원금 반환 기준은 위 '2. 지원금 성격 및 지원금(보조금) 사용 용도 등 – 지원금 성격' 참고)
☞ 지원금(보조금) 반환에 대한 세부내용은 '붙임1'자료 참고

4. 접수 기간 및 신청 방법

구분	내용
접수 기간	■ **2025. 2. 12.(수) ~ 2. 26.(수) 16:00까지, 15일간** * 접수기간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별도 공지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www.kofic.or.kr- 진흥사업안내-세부진흥사업-신청** * 접수 마감일 16:00까지 접수 완료해야 하며, 16:00 정각에 접수창 자동 종료됨
제출 서류	■ 모든 서류는 위원회 제공양식을 활용하고 각 제출 형태를 준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위원회가 작성 내용 확인이 불가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 ■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 및 과장으로 판명될 경우 선정 취소, 약정 해지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음 ■ 모든 제출서류를 번호 순으로 정리 후, 1개의 압축파일(파일명: 작품명_신청회사명_감독명.zip)로 제출 (예시: *한국영화의힘_한국영화픽쳐스_김영화*.zip) ■ 제출서류 압축파일 용량: **50MB** (50MB 이상 시 업로드 불가하므로 특히 주의) ■ 평가 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선택 제출] 신청 작품의 5분 내외 컨셉 영상(필수 제출 아님, 제작계획서 내 <4.기획의도 및 시놉시스> 작성 부분 내 온라인 스크리너 정보 작성 제출) ■ 영화제작자(신청인) 및 연출자 경력 증빙에 관한 확인사항 - **[영화제작 및 연출경력이 있는 경우]** 영화제작자 및 연출자 경력 확인은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www.kobis.or.kr)'에 승인된 '영화표준식별코드(FIMS)'를 신청서(양식)에 기재하여 증빙(FIMS확인방법 참고)

구분		제출서류	비고
신청서 접수 시	기본 서류	① 사업신청서(날인본)	(양식1)제작지원 신청서
		② 개인정보이용 및 프로젝트 참여 동의서(날인본)	
		③ 영화화 이용권리 확인서(날인본)	
		④ 보조사업 참여제한 체크리스트(날인본)	
		⑤ 보조사업 서류 제출 체크리스트(날인본)	
		⑥ 작품 참여 경력 크레디트 증명	
		⑦ 사업자등록증 및 영화제작업 신고증(제작사 참여시)	
		⑧ 제작계획서	(양식2)제작계획서
		⑨ 지원자 기본 정보(엑셀)	(양식3)신청작 작품정보
	참고	**①~⑧ 서류는 반드시 PDF 파일로 변환 후 제출** ⑨ 서류는 엑셀 파일 제출	

3. 지원 및 선정 절차

1. 지원절차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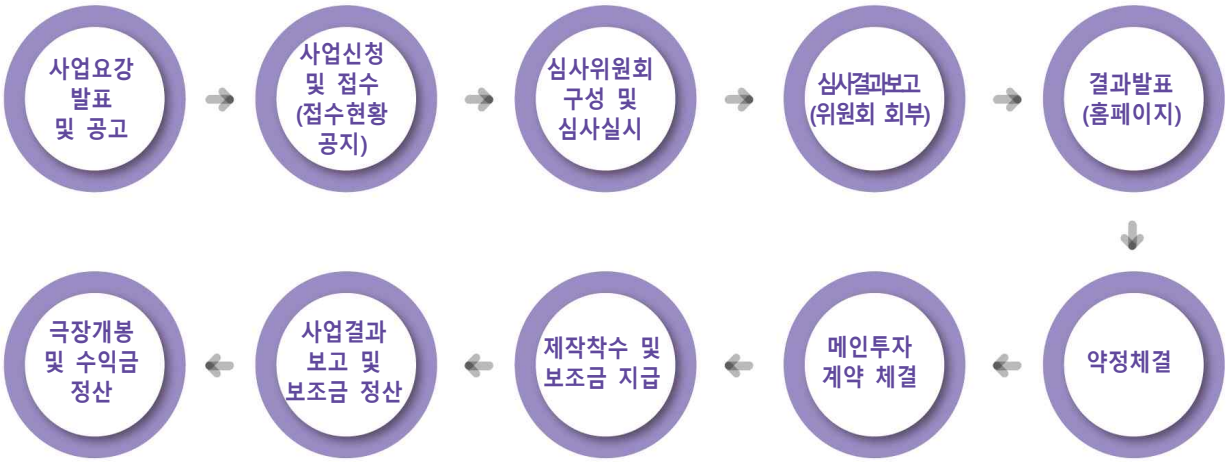

2. 선정절차

(1) 심사 및 최종선정

- 위원회의 별도 심사운영세칙에 의거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대상작품을 평가하여 지원대상 작품(지원금액 포함)를 결정함
- 선정된 작품을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의결 후 최종 선정함

(2) 전문 심사위원회 별도 구성 · 운영

- 위원회의 별도 심사운영세칙 내 전문 심사위원회 구성 · 운영 규정에 따름

구분	내용
예비심사위원회	■ 신청 접수작 편수를 감안하여 총 20인 이내(접수작이 50편 이상일 경우 N개의 예비심사위원회로 다원화, 조별 예비심사위원회 당 예심 심사 작품수는 최대 50편 이내로 제한)로 구성되는 예비심사위원회에서 2차 결정심사에 회부할 작품 2배수 내외 선정
결정심사위원회	■ 총 7인 이내로 구성되는 결정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작 및 지원규모 결정 - 예비심사위원회에서 회부한 지원대상 후보작 20여 편에 대하여 별도의 면접심사(프리젠테이션)을 거쳐 지원작품과 해당 지원작품별 지원금액 결정

(3) 선정기준

- 심사는 1차 예비심사(서류심사) 및 2차 결정심사(예비심사 통과작품 신청회사 대상 면접심사) 2단계로 진행하며, 신청작품의 기획의도, 시나리오의 작품성 및 참신성, 제작계획서 등 제출서류의 충실도 및 타당성, 메인투자계약 체결 가능성 등을 평가항목으로 하여 위원회의 별도 심사운영세칙에 의거하여 선정 예정

4. 국고보조금 관련 절차 및 규정

1. 보조금 교부절차 및 방법

- 보조사업자는 지원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와 약정 체결해야 함
- 본 보조금은 2회 분할 교부를 원칙으로 하며, 1차, 2차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교부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보조금은 e나라도움의 지급절차에 따라 교부함
- 보조사업자는 위원회가 보조금 교부 시 제반서류 및 필요한 진행사항 등의 확인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야 함
- 본 보조금은 약정체결 후 별도 신청에 의해 교부함. 단, 보조금 교부 후 환수 사유 발생 시에는 원금 환수와 별도의 제재조치 있음

2. 보조금 집행

- 보조사업자는 위원회로부터 지원 받은 보조금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별도 통장을 개설·관리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 및 통장거래내역 제출 등을 통해 위원회가 보조금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위원회는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의뢰할 수 있음. 이 경우 보조사업자는 성실히 응해야 함
- 본 보조금은 선정된 영화 순제작비 용도로만 집행 가능함('2. 지원금 성격 및 지원금(보조금) 사용 용도 등의 2)지원금(보조금) 사용용도' 참고)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 시 신고한 입·출금 계좌에서 계좌이체하거나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보조사업비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집행하는 방식 제외)으로만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이 제한된 업종에서 보조금을 사용해서는 안 됨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 시 보조사업자의 임직원(직계존비속 포함)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와는 거래할 수 없음
- 보조사업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를 진행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을 금액과 상관없이 위원회 지정 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의 회계검증을 진행하여야 함(회계 검증비는 보조금으로 집행 가능)

3. 통지의무 및 승인

- 보조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주요 변경 사항의 발생 시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자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필요하거나, 동 사업의 내용 변경 및 기간을 연장하거나, 동 사업요강에 의한 필수 지원조건('3.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의 1)필수 지원조건 참고)의 변경 및 기간을 연장하거나, 동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려는 경우

4. 수행명령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위원회 「영화발전기금 보조금 관리규정」, 기타 회계 관련 법령 및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위원회는 보조사업자가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처분에 따라 동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음

5. 실적보고서 및 지원금 정산보고서 제출

- 보조사업자는 약정서상 영화 제작완성 종료일로부터 1개월 내에 위원회가 요청하는 양식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정산범위: 위원회 지원금(보조금)

- 정산보고서 제출기한 : 약정서상 영화 제작완성(약정체결 후 15개월 이내)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제출서류: 결과보고서, (보조금)정산보고서, (보조금)세부집행내역서, (보조금)집행증빙자료, (보조금)회계검증보고서, 결과 영상물 및 지원작품 순제작비 총액 집행내역서 등
  ※ 상세내역은 약정서에 따름

6. 수익금 정산보고서 제출

- 보조사업자는 영화제작 완성 및 최초 상영관 상영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극장 상영 수입금 및 부가시장 매출수익이 영화의 총제작비에서 위원회 보조금을 제외한 총제작비 기준 손익분기점을 상회 상회할 발생할 경우, 위원회 보조금을 포함한 총제작비 기준 손익분기점까지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 보조금 원금 범위 내에서 매회 정산시마다 수익금을 상환해야 하며, 최초 상영관 상영 종료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가 요청하는 아래 정산내역서 및 회계검증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수익금 정산범위: 극장 및 부가시장 매출

- 수익금 반환대상: 극장 상영 수입금 및 부가시장 매출수익이 영화의 총제작비에서 위원회 보조금을 제외한 총제작비 기준 손익분기점을 상회 상회할 발생할 경우, 위원회 보조금을 포함한 총제작비 기준 손익분기점까지 발생한 수익금(위원회 보조금

원금 범위 내)

- 수익금 반환시기: N차별 수익금 정산완료일로부터 매 1개월 이내(N차별 수익금 반환시, 해당 회차 정산내역서 제출 포함)
- 최종 정산보고서 제출기한 : 최초 상영관 상영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
- 제출서류: 극장 및 부가시장 매출 전체 정산내역서 및 회계검증보고서 등
  ※ 상세내역은 약정서에 따름

7. 이월

-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하지 않음.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하더라도 차기 회계연도 1회에 한해 이월할 수 있음.
  ※ 2025년에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2025년 내에 보조금을 집행해야 함.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월 신청을 통해 이월(~2026년) 후 집행이 가능하나, 2027년부터는 재이월에 해당되어 이월신청 및 집행 불가

8.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보조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위원회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
  -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타기관에서 지원받은 지원금의 재원이 국고, 기금인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은 취소될 수 있으나, 지원금의 재원이 지자체, 민간단체 지원금인 경우 중복으로 보조금 지원받을 수 있음)
  - ○ 결과보고서(중간점검보고서 포함) 제출 및 보조금 정산 등의 결과가 미흡할 경우
  - ○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상실 또는 저작권이 제3자에게 임의 양도되는 경우
  - ○ 보조사업자의 휴폐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신용 불량 등에 대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말소하지 않은 경우
  - ○ 보조사업자가 본 사업 수행기간 동안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에 따른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 ○ 보조사업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각종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는 제외)
    *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벌금: 2년
  - ○ 보조사업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직장 내 성희롱)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벌금: 2년
  - ○ 보조사업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각종 성범죄)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직장 내 성희롱)의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세부 절차는 별도 공지)

9.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에 따른 제재 및 벌칙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보조사업자의 의무 불이행 및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등으로 인해 지원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음
  -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1조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보조금의 최대 5배)
  -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법칙

10. 정보공시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6조의10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보조금 총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e나라도움(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함

5. 기타 의무사항

1. 제작환경 개선

□ 표준보수지침 자료 제출

○ 보조사업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근로자 보수지급내역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함

□ 예술인고용보험 적용

○ 보조사업자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납부 및 피보험자격 신고 등과 관련하여 법령상 의무를 지는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근로자 건강권 보장

○ 보조사업자는 본 사업 진행과정에서 영화근로자를 건강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행위에 노출시키지 않아야 하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여야 함. 또한 필요한 경우 별도의 안전장구를 제공하고, 근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적절한 보상 등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함

□ 아동 보호

○ 보조사업자가 본 사업 진행과정에서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만 18세 미만인 자)에게 근로를 시킬 경우 학습권, 휴게권, 안전권 등의 보장을 위한 별도의 배려를 하여야 하며, 동법 제17조의 금지행위(성적 학대행위, 신체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 등)를 하지 않아야 함

2. 성범죄 대응 및 예방

□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및 예방교육 이수

○ 보조사업자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제작자, 감독, 배우 기타 프리랜서 일체 포함)에 대해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한국영화성평등센터를 통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수강하는 경우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교육비가 지원되며 세부 절차는 별도 공지)

3. 성평등 정책

□ 참여자 성비자료 제출

○ 보조사업자는 본 사업 착수 이전 시점과 실적보고 또는 정산서류 제출 시점에 "참여자 성비 통계자료"(별첨양식 활용)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4. 작품활용 및 정보제공 동의

□ 보조사업자는 보조대상작품이 영화화되어 개봉될 시 위원회의 지원작(아래 소정양식을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인 사실을 홍보자료 및 상영필름에 반드시 표기해야 함

- 위원회는 동 사업 진행 과정에서 알게 된 보조대상작품(또는 보조대상작품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화)에 관련한 정보를 연구 및 정책개발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을 시 보조사업자는 해당 자료를 위원회에게 제공하여야 함

5. 작품 제작진행 상황 확인을 위한 현장실사

- 위원회는 지원약정 체결 후 동 사업의 단계적 진행상황 확인을 위해 프로덕션 단계 또는 영화 개봉 단계에서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현장실사 진행시 작품 제작진행 및 개봉절차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인은 이에 응해야 함

6. 문의처

- (48058)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130 영화진흥위원회, 사업본부 창작제작팀

사업명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주소
중예산 한국영화 제작지원	김태형	051-720-4771	qksilver@kofic.or.kr

※ 전체 사업 일정 및 내용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 중예산 한국영화제작지원사업 지원금(보조금) 반환 대상 및 조건

※ 중예산 한국영화제작지원사업 지원금(보조금) 반환 대상 및 조건은 아래 내용을 원칙으로 하며, 영화진흥위원회 또는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 조건 등에 따라 상호 합의하에 달리 할 수 있다.

1. 중예산 한국영화제작지원 사업

대 상	2025년 중예산 한국영화제작지원사업 지원작 보조사업 수행 사업자(제작사) 및 지원작품
지원금(보조금) 반환 내용	위원회의 중예산 한국영화 제작지원사업 지원대상 작품의 최초 극장 개봉 이후 2년 동안 극장 개봉 및 국내외 부가시장 매출에 의해 발생한 수익금 중 위원회의 지원금(보조금)을 제외한 총제작비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위원회의 지원금(보조금)을 포함한 총제작비 까지 발생한 수익금에 대하여 위원회 지원금(보조금) 한도 내에서 반환해야 함 ☞ 위원회의 지원금(보조금)을 제외한 총제작비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지원금(보조금)을 회수하지 않으며, 위원회 지원금(보조금)을 포함한 총제작비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위원회는 총제작비에서 차지하는 위원회의 수익지분율에 따른 수익을 별도로 회수하지 아니함.
반환 대상 수익 항목	지원대상 작품의 영화상영관 상영에 따른 상영수익 및 극장 외 부가시장 매출 전체를 대상으로 함 o 상영수익: 영화관 입장권 총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영화발전기금, 영화관 몫의 수익분배금을 공제한 이후의 수익으로 영화관에서 발행한 부금계산서의 금액으로 한다. o 극장 외 부가시장 매출 수익은 다음과 같다. - 국내 매출 : 디지털온라인(IPTV 등/ 국내 OTT), TV 방송, 기타(PPL, OST, 패키지 등) - 해외 매출 : 판권판매+Overage, 항공판권, 해외 OTT 등 - 기타 수익 : 인센티브 및 제작지원 등
수익금 배분 순서	①순위: 총비용(영화의 제작·극장 개봉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배급수수료, 총제작비에 대한 현금 투자비 및 투자 관리비(민간, 필요시), 순제작비 초과비용(필요시, 5% 범위 내) 등을 합한 금액) ☞ 위원회 보조금을 제외한 위 1순위 총비용을 모두 회수한 때로부터 위원회 보조금을 포함한 총제작비가 회수될 때까지는 위원회 보조금 원금 회수 구간임 ☞ 지원대상 작품의 위원회 지원금 지분비율만큼 보조금 한도 내 수익금 반환 ②순위: 위원회 보조금 ③순위: 순이익 배분(위 '1~2순위' 회수 이후 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위원회는 보조금에 대한 수익지분을 행사하지 아니함. 따라서 위 1~2순위 회수 이후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서는 각 민간투자 참여회사의 수익지분율에 따라 분배함.) ※ 참고사항 1) 아래 경우에는 수익금 배분 순서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가. 순제작비 및 총제작비 등에 따라 수익금 배분 방식에 대하여 제작사, 배급사, 투자사 간 계약 조건 및 제작사의 순제작비 투자 지분 등 별도의 계약 조건이 있는 경우 나. 타 기관의 보조금 지원, 외부 투자 등에 따라 별도의 수익금 배분 조건이 있는 경우 2) 수익금 배분 순서는 위원회와 보조사업 수행 사업자(제작사)간 상호 합의 후 결정하며, 수익금 반환 순서 및 절차 등을 확정하고 지원약정을 체결함
수익금 중 위원회 지원금(보조금) 반환 조건	o 정산 대상: 동 사업 지원 작품의 최초 상영관 상영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의 극장 및 부가시장 매출에 의해 발생한 수익금 o 정산 범위: 극장 및 부가시장 매출 수입 o 반환 대상: 극장 상영 수입금 및 국내외 부가시장 매출수익이 영화의 총제작비에서 위원회 지원금(보조금)을 제외한 총제작비 기준 손익분기점을 상회하고 위원회 보조금을 포함한 총제작비 기준 손익분기점까지 위원회 보조금 원금 한도 내에서 발생한 수익금 o 정산 기한: 상영계약서, 부가판권 계약서상 N차 정산기일(월별 정산 기준)로부터 매 45일 이내 o 정산 종료 : 최초 상영관 상영 종료일로부터 2년 후

o 수익금 반환 시기: N차별 **수익금 정산완료일로부터 매 1개월 이내**

<예시>
- 2025년 중예산 한국영화 제작지원작 약정체결(약정체결일: 2025.5.31. 기준)
- 2025년 중예산 한국영화 제작지원작 메인투자계약 체결(약정체결일로부터 최대 3개월: 2025.8.30)
- 2025년 중예산 한국영화 제작지원작 크랭크인(약정체결일로부터 최대 6개월: 2025.11.30.)
- 2025년 중예산 한국영화 제작지원작 제작완성 및 사업종료(약정체결일로부터 최대 15개월: 2026.8.30.)
- 2025년 중예산 한국영화 제작지원작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사업종료일(약정기한 종료일)로부터 2개월: 2026.10.30.)
- 2025년 중예산 한국영화 제작지원작 극장개봉(약정체결일로부터 최대 2년 내: 2027.5.30. 기준.)
  * 극장 상영일: 2029.5.30.(2년 이내 극장 상영) → 수익금 정산 대상(O)
  * 극장 상영일: 2029.6.1.(2년 초과 극장 상영) → 수익금 정산 대상(X)
- 수익금 정산 기한: 2027.5.30. 최초 극장 개봉, 2027.7.31. 최초 극장 상영 종료일 경우
  * 1차 수익금(극장 상영 수입) 정산 기한: 2027.9.15. 이내 1차 정산완료(상영계약서상 1차 정산일(최초 상영관 상영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로부터 45일 이내)
  * 1차 정산 수익금 반환기한 : 위 정산기한(1차 정산일로부터 45일 이내)으로부터 1개월 이내
  * N차 수익금(극장 및 부가판권 수입) 정산 기한: 상영계약서, 부가판권계약서상 N차 정산일(월별 정산기준)로부터 매 45일 이내
  * 수익금 반환 기한: N차별 정산기일(월별 정산 기준)로부터 매 1개월 이내)
  * 수익금 정산 종료 시점 : 최초 상영관 상영 종료일(2027.7.31.)로부터 2년(2029.7.30)

※ **적용예시 : 순제작비 50억 원 규모의 영화**[총제작비 65억원(순제 50억 원+P&A 15억 원)]**에 보조금 15억 원을 지원하는 경우**

<위원회 지원금 **15억 원**(순제 50억 원 중 보조금 비율 최대 30% 적용시) 기준
위원회 지원금(보조금) 반환 적용 사례>

관객수 / 금액(단위 : 원)	50만명	100만명 (위원회 지원금을 제외한 BEP)	110만명	120만명	130만명 (위원회 지원금을 포함한 BEP)	150만명 (수익)	200만명 (수익)	250만명 (수익)
총수익금액	0원	0원	0원	0원	0원	10억원	35억원	60억원
투자사(60%)	25억원	50억원	50억원	50억원	50억원	56억원 (6억원)	71억원 (21억원)	86억원 (36억원)
제작사(40%)	0원	0원	0원	0원	0원	(4억원)	(14억원)	(24억원)
위원회 수익금액	0원	0원	0원	0원	0원	0원	0원	0원
위원회 지원금 회수금액	0원	0원	5억원	10억원	15억원	-	-	-

* 편의상, 극장 객단가 1만원 기준 적용(극장외 부가시장 매출을 고려한 객단가 기준임)
  ☞ 극장 객단가 : 극장이 관객에게 제시한 영화관 입장권 가격(상품단가)에서 각종 할인을 제외하고 실제 관객이 현금으로 지불한 영화관 입장권의 평균발권금액을 의미
* (투배사 및 창투사 기준) 조정 총제 50억원 기준 조정 BEP는 100만명
* (위원회 기준) 실질 총제 65억원 기준 실질 BEP는 130만명
* 위원회 투자지분율 23.07% 기준